

# 알기 쉬운 생활법률

## 금전거래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거래는 명확히

#### [1] 계약서 작성

부자, 형제지간에도 금전거래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차용증을 쓰고 일일이 도장을 찍는 것을 좀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결국 분쟁이 생겨 재판까지 가게 되면 그야말로 돈 잃고 사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 [2] 후일의 분쟁을 대비

그러므로,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계약서(차용증, 현금보관증, 각서 등 명칭 불문)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거래조건(차용이자, 변제기일 등)을 적어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 2. 상대방 확인은 철저히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금전대여의 경우 상대방의 재력, 신용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등)의 직원인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서 법인의 임직원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직원 개인과의 거래인지 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의 거래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특히, 금전대여의 경우 돈을 갚지 않을 때에 채무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채권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돈을 빌려줄 때 주의사항

#### [1] 담보는 확보되었나요?

금전대여시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확보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한 후 그래도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설정이나 재력과 신용이 확실한 제3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2]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는 경우

특히,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맡긴다면 전세계약을 가지고 왔을 때 단순히 전세계약을 받아두는 것만으로는 전혀 담보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겠다는 채권양도계약을 작성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는 집주인을 만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얻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3]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처(혹은 남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남편(혹은 처)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는 없으나,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 즉 통상적인 생활비(예컨대 자녀들의 학비 등)에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가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부부의 타방도 민법에 의하여 그 변제책임이 있으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4] 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받는 경우

차용금의 담보로 어음이나 수표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음의 뒷면에 배서(속칭 "이서"라고 함)가 연결되어 있는지, 정당하게 발행되어 유효한 어음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특히 어음자체가 원인 관계없이 단지 발행인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한 이른바 융통어음인 경우 발행인이나 그 어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사람은 전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5] 소송하게 된 경우의 이자는?

대여금관계로 소송까지 제기한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년25%이하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장부분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2할5푼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